

문경시의회 공고 제 2016-1호

「문경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문 경 시 의 회 의



문경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용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문경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할 경우에 의회가 주관하여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장의 대상을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의회장 집행을 위한 장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임무를 정함(안 제4조)
- 다.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의회장의 기간·절차·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함(안 제9조)
- 마.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례 보조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6년 2월 6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문경시 중앙로 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1) 전자우편: pak517@korea.kr
 -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 3) 팩 스: 054-550-803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문경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회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에 문경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문경시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문경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하고 문경시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문경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문경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
2. 장의에 필요한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과 유가족 대표로 구성한다.

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 소속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7조(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된 후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지역 일간지에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장의절차·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례 보조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11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

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제용품 등 기준(제10조 관련)

장 제 용 품 등 기 준

사 항 별	규 격	수 량	비 고
○ 신문광고	3단×15cm	2개사 이내	지방일간지
○ 영결식장 설치	면적6m×3m=18m ² 높이 4m이하	1식	임시구조물 영결식 현판 포함
○ 천막설치	조립식	6조 이하	
○ 의자배치	행사용	200조 이하	
○ 영구차	대형	1대	1일간
<조문용품>			
○ 영정사진	대	1조	
○ 현 화	특 대	1개	장의위원장용
	대	15개	유족 및 장의위원용
○ 흉 화	흑 색	30개	유족 및 장의위원용
○ 국 화	현화용	300개	조문객용
○ 근조리본	흑 색	200개	조문객용
○ 장 갑	백 색	150쪽	장의위원, 종사자용
○ 넥 타 이	흑 색	50쪽	장의위원, 종사자용
○ 영구차 리본	대 형	1개	
○ 조화	대형	1개	의장명의
○ 안내문 인쇄	모조 32절 180g/m ²	500매	의회명의
○ 방송설비		1식	기록보존 녹음
○ 조약대	차량	1대	필요시

※ 상기 기준은 장례 기간 및 의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